우리나라의 國際標準資料番號 制度

曺 元 鎬
〈국립중앙도서관전산실장〉

○ 制度의 導入

圖書館法은 그 제18조(國際標準資料番號)에서, "① 圖書 또는 連續刊行物을 발행하고자 하는 者는 그 圖書 또는 連續刊行物에 대하여 國立中央圖書館으로부터 國際標準資料番號(이하 '資料番號'라 한다)를 부여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番號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附則 ① (施行日)에서,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8條 第1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圖書館法은, 1963년 10월 28일에 제정·공포되어 24년 동안 시행해 오던 旧法을 全面改正하여 1987년 11월 28일 法律 第3972號로 공포,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1988년 2월 28일부터 施行되고 있는 現行法이다.

1987년 10월, 圖書館法改正法律案의 提案者인 金賢子議員은 "급변하는 現代 情報·産業社會에서 多元化된 圖書館의 機能"을 강조한, 國會에서의 提案說明에서 ISBN을 규정한 改正法律案 第18條 등에 관련, "…圖書 및 書誌情報에 관한 流通의 促進을 위하여… 國際標準資料番號를… 制度化하고, 그 실시시기는 이 制度에 대한 社會的 理解와 與件이 造成된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도록" 하였다고 言明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제 國際標準資料番號, 즉 國際標準圖書番號(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ISBN)와 國際標準連續刊行物番號(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ISSN) 制度는 우리나라의 實定法에 의하여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것이다.

앞에서 본 圖書館法 第18條의 第1項은, 우리 나라에서도 이 制度를 도입·시행한다는 점과, 그 국내 관리자(國家ISBN管理處=National ISBN Agency)를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한다는 점을 밝힌 규정이다.

다만,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서는 적지않은 세부규정과 상당한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이므로, 法은 第18條의 第2項에서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그 施行日도 附則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大統領令인 圖書館法施行令의 改正作業이 그 동안 신중히 진행되어 조만간 公布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이 제도의 施行日은 改正施行令의 公布日로부터 적어도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둘 것으로 알려져 있다.

改正되는 圖書館法施行令의 公布時期를 오는 7월쯤으로 볼 때, 韓國의 ISBN 및 ISSN System은 1990년 초부터 사실상 가동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文獻과 文獻情報의 流通效率을 획기적으로 伸張하기 위하여 그 동안 文獻의 創出과 配給—그리고 그 蓄積과 情報管理를 담당하는 각 분야에서 다 같이

희망하고 촉구해 왔던 國際標準資料番號제도의 국내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의 운영방법 및 번호체계의 구조와,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지금부터 챙겨야 할 여러 課題 및 서둘러야 할 준비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는 'ISBN'을 중심으로 하여 記述하되, ISBN제도 그 자체에 대한 이해(이 부분은 여러 문헌을 통하여 이미 상당히 소개되었으며 앞으로도 소상하게 알려질 것으로 짐작되므로) 보다는, 이 제도의 국내 시행에 관련되는 주요 '과제'들을 다루는 쪽에 한결 중점을 두고자 한다.

○ 制度의 槪要

책에 개별번호를 부여하려는 발상과, 그 발상의 '標準化' 및 '國際化'를 선도한 나라는 영국이었다.

영국은 한 출판사가 협회를 설득하여 전문가 (A. J. Well과 F.G. Foster)의 권위 있는 연구성과를 얻어내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전산화기법을 적용한 전국규모의 표준번호를 제도화(1967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서거래에 관한 1966년의 국제회의를 필두로하여 이후에 전개되는 '국제화' 과정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1966년을 기점으로 고조되기 시작한 국제적 관심은 1968년 國際標準化機構(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의 第46分科技術委員會(Technical Committee=통상 ISO/TC 46이라함)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구체화 되어, 1969년 최종안이 성안되고 같은 해 ISO총회에서 이른바 'ISO Recommendation 2108'이 인준됨으로써, 도서번호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제도가 확립되었던 것이다.

현재 ISBN에 적용되고 있는 국제규격은, 1970년에 확정된 ISO규격 2108로서 'Documentatio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ing'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특정 도서에 대한 국제표준번호는, 네 부분이 조합된 총 열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되며 그 앞머리에 'ISBN'이라는 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네 부분은 다음과 같다.

- 國家 또는 群別記號(Group Identifier)
- 發行者記號(Publisher Identifier)
- 書名識別記號(Title Identifier)
- 책크記號(Check Digit)

만들어진 ISBN의 實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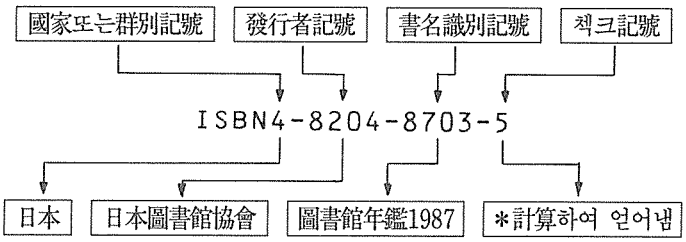

이때 국가 또는 군별기호는 國際ISBN管理處(International ISBN Agency)로부터 國家 또는 群別ISBN管理處(National ISBN Agency)가 부여 받는 것이고, 발행자기호는 국가ISBN관리처로부터 發行者(出版社)가 부여 받는 것이다. 그리고 서명식별기호는 발행자가 결정하며 책크기호도 '규격'에서 정해 놓은 방법에 따라 발행자가 표시한다.

어느 경우나 '부여'받는 기호의 길이(사용할 수 있는 자리 수의 폭)는 '출판량'을 기준으로 하게된다.

결정된 도서번호는 반드시 책에 표시되어야 하며, 그 위치는 '규격'에 정해져 있는 데, 최대한 손쉽게 "눈에 띄는 위치(prominent position)"가 고려되었다.

ISBN제도의 운영체제는 국제관리처—국가 또는

군별관리처—발행자로 연결된다. 국제관리처의 주된 임무는 국가 또는 군별관리처를 승인하고 해당 기호를 부여하며 제도의 이용을 지도 • 감독하는 일이고, 발행자의 주된 임무는 국가 또는 군별관리처로부터 발행자기호를 부여 받아 서명식별기호를 결정하고 체크기호를 매기며 ISBN의 최종 적용과정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국가 또는 군별관리처의 임무에 대하여는 뒤에 좀 더 상세하게 보기로 한다.

ISBN의 초기 발상은 출판경영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표준 道具로 발전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큰 목적에 합당했기 때문이다.

즉, 출판작업관리 • 주문절차 • 재고관리 • 반품도서처리등의 去來業務를 중심으로 하는 '書籍의 流通'과, 목록편성 • 열람대출관리 • 도서관상호대차운영 • 정보검색등의 書誌業務를 중심으로 하는 '文獻情報의 流通'을, 다같이 결정적으로 '效率化' 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 같은 인식이 이른바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國家' 차원의 중요 관심사로 발전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國際標準化'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ISBN제도의 연혁과 그 운영체제 및 코드의 구조와 표시방법, 그리고 이 제도의 목적과 현대적 의의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문헌들을 참고할 수 있다.

- 玄圭燮. 國際標準圖書番號(ISBN) 制度의 基本方向分析. 도서관, 제43권 제1호(1988년 1 • 2월호)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88.
- The ISBN System User's Manual. [2nd. ed.] Berlin: International ISBN Agency, 1978.
- ISBN Review. Berlin: International ISBN Agency, 1987.

○ 制度의 成功的 시행을 위한 課題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는 이제 우리에게 도입되어 있다. 文獻과 文獻情報의 流通效率을 높혀 나라의 情報能力을 伸張하는 데에 '사실상' 그리고 최대한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잘 운영하는 일 만이 출판 및 도서관계를 비롯한 관련분야의 현실 과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미리 풀어보고, 적절히 대응하는 노력을 전개하며, 실무적인 준비를 갖추는 것은, 어느 것이나 당장 서둘러야 할 일로 생각된다.

이 제도는 국내 시행에 앞서, 여러가지 전문적이며 **技術的인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 있어야 한다.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첫째로 對象資料의 유형별 限界設定과 그 적용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일이다. ISBN의 경우 對象資料의 범위에 관한 원칙적인 基準은 그 'User's Manual'에서 정해 두고 있다. 그러나 예컨대 "Printed books"라고 했을 때, 이를 叢書 • 全集 기타 多册本(multi-volume) 등 출판 또는 제본상의 다양한 형태에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보다 정밀한 구체적 준칙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경우는, 총서명과 개별서명의 문제 외에도 상이한 장정의 문제, 중판 • 중쇄의 문제, 테이프 등 비도서자료에 딸린 도서의 문제, 소프트웨어 등 전산관련 자료의 취급 문제, 마이크로 형태물 • 각종 복제물의 취급 문제, 과거 출판물에 대한 소급적용의 문제, 발행자등이 둘 이상 개입하고 있는 도서의 문제, ISSN대상자료와의 관련 문제 등등 매우 많다.

둘째로 번호의 表示方法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일이다. 표시방법은 주로 ISBN을 책에 인쇄하는 형식과 그 위치의 문제가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User's Manual'에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① General ② Printing of ISBN on books ③ Printing of ISBN on books for machine reading 등으로 나누어) 하고 있으나, 現場狀況의 다양함과 新技法(특히 컴퓨터 응용)의 출현 등으로 세밀한 검토와 그 規格化가 필요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특히 機械可讀型 技法과 符號의 채택은 불가피한 일이고, 따라서 그 채택 • 적용에 관한 기술적 검토가 시급하다. Bar Code 사용에 따르는 여러 문제

들과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Font의 결정, 그리고 이들 기법의 적용을 위한 전산 시스팀의 지원 등이 주요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EAN(European Article Number) Code와 ISBN을 겸용하는 英國의 경우와 기타 선진 사례등이 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어느 정도의 附加的 記號를 사용할 것이며 그 구성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연구·검토를 거쳐 우리 나라 '문헌번호'의 시스팀을 확정하는 일이다. 附加記號에 대한 표준규칙은 아직 명백치 않다. 그러나 英國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미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연구 또는 계획 중에 있으며, 1981년에 확정된 '日本圖書コード'에서는 國別(群別)—發行者—書名—체크 記號 외에, 分類 및 價格 Code를 부가하여 시행하고 있다.

네째로, 이 밖에 번호 사용에 관련되는 여러 문제들, 예컨데 번호의 複數使用·再使用 등,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상황에 대한 처리 준칙이 합리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制度的인 측면에 있어서도,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있다.

첫째로 관련 國際機構들과 우호적이며 효과적인 關係를 형성해 둘 필요가 있다. ISO외에 西獨 베르린에 있는 프러시아문화재국립도서관(Staatsbibliothek Preussischer Kulturbesitz)의 International ISBN Agency와 프랑스 파리에 있는 ISDS (International Serial Data System)의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Registration of Serials 등과는 사전 준비단계에서 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우리나라 ISBN관리처(국립중앙도서관)로서는 가입할 때부터 유리한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관리처로부터 배정 받을 국별기호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자리 수가 짧을수록 그만큼 유리한 법이다. 1981년의 日本이 '4', 1987년의 中國이 '7'의 한 자리 기호를 받은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물론 자리 수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그 나라 출판량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게 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제 요소로 시사되는 한 나라의 '國力'이 무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우리의 경우에는, 중국이 한 자리 수를 부여 받아 있고 우리가 이제 가입하려는 時點에서 自由中國과 北韓이 아직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도 두루 유의 할 필요가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 일에 관한 한 처음부터 매우 조직적이고도 주의 깊은 교섭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서지표준화의 관련 제도를 함께 시행하여 ISBN의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할 일이다. ISBN 및 納本제도와 상호연계되어, 목록의 표준화와 서지정보 공급의 신속화 및 인력의 절감 등에 크게 기여하게 될 CIP(Cataloging in Publication)제도는 ISBN과 同時에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네째로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요건 등 세부 시행규정을 되도록 빨리 확정하여 한국 ISBN의 종합적인 使用指針書(User's Manual)를 꾸며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보아 온 技術的·制度的 과제들을 제대로 풀어가기 위하여서는, **環境的 기초**를 다듬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과제의 핵심은 ISBN제도의 운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여러 분야, 즉 출판계·서점업계·도서관계·전산업계와 표준화기관 및 관련 학계 상호간의 '理解'와 '協力'에 모아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제도 운영의 직접 당사자가 될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협력 如何는 제도 자체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요인이 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출판과 도서관은 영원한 동반자 이다. 그리고 ISBN은 바로 그 토대 위에서 발전해 온 제도이다. 이같은 이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잘 입증하고 있다.

ISBN의 기원은 한 출판사(W.H. Smith & Son Ltd. 1965—영국)의 발상이었다. 그 제도화를 위한 기초 연구는 教授(F.G. Foster)와 司書(A.J. Well)의 공동작업이었다. 국제표준화를 위한 최종안의 심의에는 출판·서점계 및 UNESCO와 함께

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es=세계도서관협회연맹)가 협력하고 있으며, 西獨의 한 도서관이 국제ISBN관리처로 지정된 것은 IFLA · ISO · IPA (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등의 승인에 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ISBN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국가ISBN관리처를 보면, 출판계와 도서관계가 거의 반반 씩이며 일부 정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나라에서도 도서관행정을 수행하는 부서와 출판행정을 수행하는 부서가 또한 거의 반반 씩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모두, ISBN에 관한 한 출판계와 도서관계는 주객이 따로 없는 공존 · 협력의 관계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점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ISBN관리처를 도서관법에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정해 놓은 규정에 대해서 출판계가 가지고 있는 다소간의 비판적 시각이, 이 나라 ISBN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에, 아무리 적게라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본질적으로 통제적 권력기관이 아니고 문화적 봉사기관이다. 전국의 도서관 · 정보협력망을 이끌고, 국가문헌정보체제를 형성 운영하며, 이를 위한 Computer System化를 추진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는, 우리나라 ISBN제도의 정착에 공헌하는 일 또한 그 책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ISBN은 그것을 公費로 운영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ISBN의 시행을 앞 둔 마당에서, 출판과 도서관의 협력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칠 것이 없을 만큼 긴요한 일이다.

'協力'이 아니고서는, 저 많은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작업들과 제도적인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가 없을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제도 자체의 온전한 운영을 기약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 서둘러야 할 準備事項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당면과제들을 효과 있게 풀어나감으로써 한국ISBN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제 그 준비를 서둘 때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의 「국가ISBN관리처'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책임과 역할이 무겁고 중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는 이미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믿어지지만, 여기에 몇 가지 주요사항을 짚어 두고자 한다.

ISBN 'Manual'이 제시하고 있는 군별 또는 국가ISBN관리처의 일반 기능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국가 또는 그룹을 대표하여 국제ISBN관리처와 교섭하는 일.
- 발행자기호의 범위등을 결정하는 일.
- 발행자기호를 부여하며 관련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일.
- 발행자에 대한 기술적 권고와, 승인된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는 일.
- 발행자등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 배포하는 일.
- 컴퓨터로 출력되는 ISBN을 제공하는 일.
- 자체적으로 번호를 배정하지 않는 출판사의 출판물에 ISBN을 부여하고, 그것이 사용되도록 권장하는 일.
- 발행자 등에게 무효 또는 이중 번호를 알려주는 일.
- 국가 또는 그룹내의 모든 출판물에 대한 번호부여가 완성되도록 하는 일.
- ISBN을 포함하는 목록을 간행 또는 간행하게 하는 일.
- ISBN관련 모든 분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
- 컴퓨터 시스팀화 된 ISBN을 통하여 유통을 돕는 일.

이 정도로 요약해 보더라도 그 일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우기 우리의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그 운영의 출발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일

거리가 결코 만만치 않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ISBN관리처의 사무를 전담할 내부 조직(편의상 'ISBN사무국'이라 부른다)을 시급히 갖출 필요가 있다.

ISBN사무국은 물론 앞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각계의 이해'와 '협력'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이른바 '환경'을 다듬는 일과, 전문적·기술적·제도적인 여러 과제들을 풀어가는 중추 역할을 떠맡게 될 것이지만, 우선 다음의 몇 가지 일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 ISBN, ISSN의 대상이 되고, 국별기호 배정의 근거가 될 출판관련 각종 현황을 상세히 파악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
- 국제ISBN관리처 등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고 적절한 시기에 유리한 국별 기호를 배정받는일.
- 도서관법시행령이 알려진 案대로 개정된다면, 지체없이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등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일(이 심의회는 관련 각 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중심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사전 준비는 이미 착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위 '심의회'의 심의를 구할 모든 초기 과제들(대상자료·표시방법·부가기호·번호사용관리·한국문헌번호의 구조·Bar Cord와 OCR 및 CIP 등의 적용 문제 등등)에 대한 연구 검토와 그 구상을 정리해 두는 일.
- 도서관업무 전산화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ISBN 전산시스팀의 개발을 진행하는 일.
- 일체의 과제를 정리하여 '한국문헌번호이용지침서'를 작성 간행하여 그 시행 전 여유 있는 시기에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
- 세미나 기타 각종 연구모임 등을 통하여 ISBN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널리 의견을 수렴하며, 일반에의 홍보를 지속하는 일.
- 사무국 자체의 상세한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고 사무체제를 확립하는 일.

준비작업은 ISBN사무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데 발행자는, 국가ISBN관리처로부터 해당 발행자기호를 부여 받고 자기가 출판하는 품목에 서명식별기호와 체크기호를 매겨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발행자기호를 부여 받기 위하여서는 절판되지 않은 과거 출판물에 대한 정보와 현재로부터 앞으로의 출판계획과 관계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ISBN 'User's Manual'에서는 "기호의 운영과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출판사는 특히 유능한 직원에게 이 일을 담당케하도록" 권하고 있다.

우선 전국의 출판사등과 ISBN사무국은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여 각 자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일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한국의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는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곧 나라의 문화적 선진화를 위한 강한 힘이 될 것이다.

회원 입회절차

회원에 입회코자 하실 때에는
회원입회 신청서에 소정사항을
기재 날인하여 제출하고 소정회비를
납부하시면 회원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 1. 전화신청가능
2. 회원가입시특전은 평생 회원란 참조
3. 연락처 : 한국도서관협회
• 전화 : 535-4868·5616

회원의 구분

회원구분	회비(연)	입 회 기 준
단체회원 1 급	180,000원	특별시·직할시·도청소재지의 국공 사립 공공도서관/대학(교)도서관/연구기관 부설도서관/금융기관 및 기업체 부설도서관/중앙부처 부설도서관/군기관 부설중앙도서관/기타 주요도서관
단체회원 2 급	120,000원	시소재지의 공사립 공공도서관/전문대학 도서관/관공서 및 사회단체 부설도서관/군기관 부설도서관/기타 주요도서관
단체회원 3 급	40,000원	초중고등학교도서관(실)/군읍면소재 공사립 공공도서관(부회비 2,000원 포함)
개인회원	10,000원	도서관 기타 도서관시설의 직원 및 도서관학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